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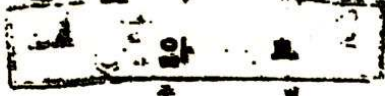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J-02593

일시: 221445

착신전보

8646



수신인: 외무부 장관 귀하

금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여 걸쳐 일본 고사카 외상과 회견하였을 기  
이여보고하여 김동필 중앙정보부장이 별도로 부외장에 본건에관하여 보고가 있을 것임  
을 전함.

- 기 -

일반문서로 재분류(심리외국) (종로구)

출석자. 일본측: KOSAKA 외상.  
TAKEMOTO RYUJI 외무차관.  
KAWAMURA ZENJI<sup>RO</sup> 외무정무차관.  
ISEKI YUJIRO 아세아 국장.

4, 6, 30 st

한국측: 김동필 중앙정보부장  
백외환 주일대사.  
최영택 참사관.  
석정선 중앙정보부 제 2 국장.

1. 본 회담에서 김정보부장은 동남아 제국방문소감에 대하여 말하였음.
2. 한일 회담에 관하여서는 고사카 외상은 정치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같이 말하였으며 이세키 국장은 서울과 동경 양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음.
3. 고사카 외상은 두드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측이 이에 응소할 것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김부장은 별 실질적 가치 없는 심문제를 일본이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본의 희망을 부외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음.

수신시간: 17

179

검인

1582

17/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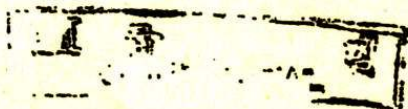
0217

외신과

계 수

4. 미국수출문자에관하여 문의하였던바 고사기가 외상은 한국미를 수입하기로  
결정됨을 말하였으나 그수량에대하여서는 언급하기를 회피하였으며 작 21 일에  
고노 농상은 국회에서 아담축으로부터 한국미 수입에대하여 심한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였음.

주일대사



0219

180

의 신 과

1583



1-3

~~III 級 秘 密  
CONFIDENTIAL~~

6  
100

# 韓 日 外 相 會 談 綜 合 報 告

(1962年3月)

검토필(1963 5. 20.)

검토필(1963 11. 15.)

1966. 12. 31. 에 이르기까지  
의외 발췌문서도 미검토됨

1966. 12. 31. 까지  
미검토된 문서도  
961

一般文書로再分類 (韓日會談  
終結時)

보통문서로 재분류 (66. 12. 31.)

## 外 務 部

~~III 級 秘 密  
CONFIDENTIAL~~

1967

0628

332



# 目次

一	今次非相會談에 對한  우리의 基本 態度.....	1
二	日本側의 態度.....	3
三	會談內容의 要約.....	9
1.	一報 請求權問題.....	9
2.	平和線 問題.....	15
3.	法的地位問題.....	17
4.	船舶問題.....	20
5.	文化財問題.....	22
6.	別個問題.....	23
가.	獨島問題.....	24
나.	駐韓 日本代表部設置問題.....	25
四	今次會談에서 얻은 經驗.....	31
五	次期政治會談의 開催時期 및 場所	

333

1968

0629



問題の對峙考察 ..... 38

附 錄

I. 發表文 ..... 43

1. 崔外務部長官 出發聲明書  
(於平壤) ..... 43

2. 崔外務部長官 到着聲明書  
(於東京) ..... 47

3. 崔外務部長官 開會辭 ..... 51

4. 小坂外相 開會辭 ..... 56

5. 共同聲明書 ..... 60

II. 會談關係 諸報告 ..... 63

1. 第一次會議 會議錄 ..... 64

2. 崔長官～池田首相 會談內容  
報告 ..... 105

3. 首席代表間會談 (第一次)

334

1969



內容報告	.....	110
4. 第2次會議 會議錄	.....	114
5. 首席代表團 會議 (第二次)		
內容報告	.....	126
6. 請求權 額數 提示에 關한 請訓	.....	130
7. 第三次會議 會議錄	.....	132
8. "해리만" 次官補와의 會 談 內容報告	.....	160
9. 第4次會議 會議錄	.....	163
10. 第5次會議 會議錄	.....	177

(끝)

335

1970

0630



~24~

은 印象을 증으로써 韓國側主張에  
屈服하고 있다는 非難을 免하려  
하는 意圖이었을지 모른다

3) 또한 이러한 問題를 提起함으  
로써 韓國側에 心理的 負擔을  
주어 協商에서 有利한 立場에  
서서는 策略이었다

가. 獨島問題

日本側은 이 問題에 對하여  
그 領有權을 今次 會談에서  
決定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國際司法裁判所に 提訴하려는  
原則이라도 定하고서 하였으나  
우리側은 獨島가 史的 地理  
的으로 我國領土의 一環인 것이  
嚴然히 證明되는 것이라고 又敢

1994...

35P

七  
가



하고 따라서 우리가 國際司法  
 裁判所에의 提訴에는 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問題가 韓日關係  
 正常化에 障礙物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強調하였다

앞으로 이問題에 對한 우리  
 의 立場은 繼續 國際司法裁判  
 所에의 提訴에 同意하지 않고  
 嚴然히 우리領土의 一部라는  
 立場을 堅持하며서 日本側과의  
 協商에서 는 되도록 이問題에  
 對한 言及을 避하는 同時 國  
 交正常化後에 서로 正常 外交  
 經路를 通하여 說明할 수 있을  
 것아 라는 余地를 남겨둔다

4. 日本의 駐韓代表部設置問題

1995

360

0643



1. 韓日外相會談第1次會議  
會議錄

1. 時日 ~~與~~ 場所: 1962年3月12日

午前9時 ~ 12時  
9:00 ~ 12:00

2. 參席者: 韓國側:

外務部長官	崔 德	新
駐日大使	張 義	煥
外務部政務司長	文 哲	淳
駐日代表部參事官	崔 英	澤
外務部亞洲課長	嚴 永	連

日本側:

外務大臣	小坂善太郎
首席代表	杉 道助
外務省亞細亞課長	伊 蘭 佑二 郎

398

2033

마 國際 共產主義者는 兩國의  
永遠한 難問을 別策하고 있음

바 兩國의 提携이 尙한 點은  
認識은 앞으로의 多大한 障害  
와 難問을 打開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사 眞正한 이웃이 될 수 있는 契  
機를 마련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임

( 人事가 끝난 다음 實質的  
인 討議에 들어가기前에 "  
小坂, 外相은 獨島問題와 日  
本의 駐韓代表部 設置問題에  
關하여 言反하였음 )

小坂 外相 : 獨島問題에 關하여

401

2036

0664



이 지리에서 討議하더라도 解決되지  
않으리라 고 生覺하므로 于先 여  
기에서 同 問題를 國際司法裁  
判所의 같은 公正한 第三者에게  
調整을 依頼하는 것이 중으리라 고  
生覺한다

崔 長官 : 獨島는 歴史的으로  
나 國際法上으로나 我國의 領土  
임이 判明되어 있으며 이 問題는  
여기에서 論議될 性質의 것이  
아니다 外相은 日本國民의 感情  
을 拂들우기 爲하여서도 獨島問  
題를 討議의 對象으로 하지 고  
復議하나 오리러 이 問題가 最  
終段階에 是 懸案問題 解決에

402

2037

一大 支障을 招來할가 念慮되다  
貴國은 貴國의 國民의 感情을 重  
要視한다고 하지만 우리 政府도  
亦是 國民의 感情을 無視할수 없  
으며 國民의 輿論과 國民이 願하  
는바에 따라 政策을 遂行하여 나  
가야 할 義務가 있다

小坂 外相 : 여기에서 本 問題  
에 關해서 資料를 相互間에 提示  
하고 討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兩國이 第三者의 國際司法裁判所에  
이 問題를 雙方에서 提訴하면 지  
또는 日本이 提訴하면 貴國의 應  
斷을 다는 形式으로 이 問題를 處  
理하자는 것이다 懸案問題의 解決

403

2038

0665



되더라도 領土問題가 解決되지 않  
으면 國交正常化는 無意味한 것이  
라고 生覺한다

카  
七

崔 長官 이 問題를 가지고  
日可日否하는 것은 會談의 雰圍氣  
를 阻害하는 結果가 된다고 生  
覺한다 비록 昔은 無人島라 할  
지라도 嚴然히 我國의 領土인 이  
上 우리政府는 이것을 守護하지  
않으면 안된다

小坂 外相 : 韓國은 獨島가  
自己領土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日本은 또한 歷史的으로나 其他  
의 資料에 依하여 自己領土라고

404

2039



만고있다 이와 같이 兩國은 相  
 反되는 主張을 하고 있으며 이  
 問題는 언젠가는 解決되어야 하  
 며 이것 없이는 國交正常化도 眞  
 正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그것을  
 未然에 防止하는 意味에서 國際  
 司法裁判所に 提訴하는 것이 다

崔 長官 : 只今 小坂外相은  
 이 無人島에 對해서 淸은 關心  
 을 갖고 이 問題가 解決되기 前  
 에는 國交正常化를 하여도 無意  
 味하다. 是는 大國民的 精神을  
 彼此가 持는 心에 關하여 不  
 必로 하  
 게 큰 關心을 갖지 않는 것이

405

2040

0666







結.을. 期.하.려.는. 此.際.에. 이. 問.題.  
를. 解.決.해. 놓.치. 않.고.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남.을. 것.이. 다.

崔 長官 : 國.交.가. 正.常.化.된.  
以.後.에.도. 兩.國.이. 이. 問.題.를. 外.  
交. 經.路.를. 通.하.여. 交.涉.할.수.도.  
있.는. 것.이. 나. 만.큼. 只.今.은. 甚. 重.大.  
한. 問.題.의. 討.議.를. 始.作.하.는. 것.이.  
本.又.이. 貴.國.을. 訪.問.하.야. 洽.談.하.  
는. 目.的.에.도. 附.合.된.다.

小坂 外相 : 國.際.司.法.裁.判.所.에.  
眼.對.하.는. 問.題.의. 이. 問.題.에. 關.  
한. 決.定.을. 必.히.는. 問.題.의. 是.否.

407

2042

0667



三 別個의 것이다. 國際司法裁判  
所의 判決이 내리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이나 다만  
國支正常化前이라도 이 問題를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한다는 原  
則에 合意하는 것이다

崔 長官: 本人은 이 問題에  
對한 具體的 準備도 없고 確決  
된 命令도 가지 않고서 있었으므  
로 다만 責見을 本國政府이 報  
송하여 傳達토록 하겠다

小坂 外相: 韓國의 駐日代  
表部가 東京에 있는데 日本의  
代表部는 서울에 있어 여러가지

408

2043

~~II 급 비 밀  
SECRET~~

사본

1.62년 11월 11일

상회 번호 1503

수신 : 중앙정보부장  
발신 :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제목 : 대일 청구액 관련 문명

외정우 2294  
에기하 修正

지난 10월 20일 부록 22일 가지의 귀하의 대일 청구의 성과를  
치마하며, 아울러 귀국토중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카와 외상  
과의 재차 회담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난 10월 17일 가지 문명  
따로된 속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

1. 전반회의 내용의 확인

지난 10월 20일의 귀하와 오카와 외상과의 회담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그후 주일대정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대사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쌍방의 기록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사 결과를  
주일대사로 하여 보고 받은후, 금번 회담에서는 차이점에 대하여  
오카와 외상의 확실한 복안을 다짐받기.

2. 청구액에 관하여

가. 명목은 독립 추가금 또는 경제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청구액에 대한 변제 내지 보상으로써 지불될 것이라는 점을  
남득시킬수 있는 노면이 되어야 함것임을 강조함것.

2114

~~II 급 비 밀  
SECRET~~

150



나. 지불 능력이 있어서 약속은 순번제와 무상조의 합계액이 차관액보다 많아이어야하며, 또한 이들의 총액이 6억불 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양보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고, 지난번에 오미하 외상이 시운한 무상 공여 액수를 과거의 일축 제시액보다 훨씬 진보된 액수이며, 논의의 대상이 될수 있는 선까지 도달되었다고 인정되니 이 액수를 우선 일축이 회답에서 공식으로 저의 하는것이 앞으로의 회담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것임을 강조할것.

실제 고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선을 기본으로 고선할것.

2 내지 2.5억불 (순번제 + 무상조) + 2.5 내지 3억불  
( 차관 ) - 6 억 ( 총액 )

단, 이 경우에 있어서 무상조가 3.5 이므로 내려올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할것.

- (1) O.A 부채액을 일축으로 하여금 로케 서킬것.
- (2) 지불 기간을 최단으로 하고 이자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을 가장 특혜적인 (특별이유이안) 조건으로 할것.
- (3) 지불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무상조의 적어도 반액을 연금 (미분) 으로 지불할것을 요구할것.

(51

- 다. 기종 규정이 있어서는 5년 이내로 단계를 추상할것.  
(제22조 5년 내지 10년)
- 마. 연구원 복역에 있어서는 물론, 아첨음식의 미발급을 포함하는 것이 상당 간의 금약 차이를 조절하는데 용이한것임을 강조할것.
- 바. 사실상 관가에는 밖으로 한국측이 국교 정상화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대하여 일측에서 금약을 올리는 데 필요하며 또는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나 밖으로 하기에 한국측은 회담의 아첨음 추진하기 위한 성의에서 일체의 입장을 일보하여 차관을 고쳐주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오히려 외상에게 표시하였는데, 일측은 지금의 외치는 차관은 별도로 국교 정상화 후에 취급하겠단느니 또는 시일을 정하지 않자느니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 곤란한 마드임을 지적할것. 동시에 아첨음으로서도 상업 이익소액 인한 차관이 아니라 연구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적 상업으로서 정부대 정부 차관을 고려하는 것이니 그액수가 분명히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조건도 특별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할것. (이자율, 무이자 또는 3.5% 이하, 개시기간 5년 이상, 상환기간 25년 이상, 수입기간 5년 내지 10년 이내)

3. 어업 문제에 관하여

- 가. 일본이 연구원 문제에서 성의를 표시하면 한국은 어업문제에서

172



신속성은 보이겠으나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고,  
현재 이러한 방침에 입각한 편집단을 작성중인데 10년 이상을  
두고 지극한 변화선에 관하여 신속성을 보이자니, 광케기광  
이나 수습적인 의견을 조정하는데 다소의 시일을 오마르 있  
음을 설명하겠.

나. 더욱이 우리국민이나 광케 기광에서는 아직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를 보냈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오하여  
한국측이 부담이 남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  
임으로 일본측이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성의를 보이는것은  
언급문제의 해결도 촉진하는 결과가 될것임을 지적하겠. 이에  
관하여 일측에서는 지난번 11월 14일 외상이 고하에게 서사  
하였던 무산공의 약속을 확인하기를 꺼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일측이 한국측으로 하여금 언급문제에 있어서의  
양보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내의 광케자의 협조를  
어울 경화시키는 효과를 낼것임을 지적하겠.

다. 일본측은 제 5 다이오마루가 석방된 예를 지적하면서 다른  
나도 어건의 석방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바판 요구가  
있으면 제 5 다이오마루 석방 결정이 특별한 고역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일본측의 요구가 과도한것임을 지적하겠.  
회담 진행중에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삼가시켜야함것이므로

일본의 경우 : 본국상을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할것을 요구하고  
급부조로 긴급 선이 발견될시에는 나포할 것임을 선언할것.

4. 독도 문제

일측에서 독도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다른 통 문제가 한일회담  
의 전담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한국민에게 일본의 대한 침략의 경과를 상기시킴으로써 회담의 분위기를  
불안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할것.

5. 기타

오오이카 외상과의 회담 결과 여하에 따라서 만약 문제가 일본에  
서 미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일 기업을 엄정히 검토 가함. 단.

1966년 7월 27일  
외국인 관리국  
외국인 관리부서로 분류됨

비밀문서로 분류 (회담 종료시)

~~II. 급 비 밀  
SECRET~~

2118

154





외하여라는 명목을 사용할것을 주장하였음.

이에대하여 김부장은 반대를 제기한후 대안으로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위하여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000불을 지불하며 또 000불의차관을 제공한다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이로써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자고 하였던바, 오히라 외상은 연구에불만한 안이라고 말하면서 전문가에게 연구시키겠다고 하였음.

(2) 어업 및 평화선 문제

오히라 외상은 아측으로서는 구체안이 완성되어 언제든지 제출할 용의가 있으니 한국측에서도 즉시 구체안을 작성 제출하여달라고 하였음.

이에대하여 김부장은 아측이 구체안을 제출할 용의는 가지고 있으나 청구권 문제가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었던 만큼 제출하지 않은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1) 아측의 3개원칙을 설명하였으며, (2) 자원조사가 완료될때까지 잠정적인 협정을 체결할것을 시사하였으며, (3) 평화선은 국방선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음.

양측은 어업문제에 관한 토의를 예비절충에서 촉진시키기로 하였음.

(3) 법적지위 문제

오히라 외상은 회담 전체의 공기를 일층 좋게하는 취지에서라도, 법적지위 협정의 토의를 더욱 촉진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다른 협정에 앞서 본 협정의 가조인을 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음.

김부장은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는 ,

2124

163



표 3 - 3 -

(가) 제일코포의 특수한 내정에 감하여 제 3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위와 처우를 주어야하며,

(나) 선전법주의 반인은 사상 기타 이유에 의하여  
그 일부가 법정에서 배제될수 없음을

주장하였던바, 오비타 외상은 법률가에게 연구케 하겠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본의를 추진하여 조속 해결할것에 합의하였음.

(이하 다음 페이지에 계속)

1962/3/1

2125

~~표 3 - 3 -~~

164

(5) 선박 문제:

오히려 외상은 (1) 한국측에 나포된 일본 어선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하자 (2) 넓은 해상에 사이가 있고 사실 관계의 확인도 곤란 하니 철저적인 해결을 바라는 등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김 부장은 상쇄할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일본은 한국이 요구하는 손수에 해당하는 신포 선박을 반환하려고 하였음.

(5) 문화재 문제:

오히려 외상은 일측에 반환 의무가 없으나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촉진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국유 문화재를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며, 김 부장은 1957년 12월 31일자 "오랄 스테이트먼트"의 선택에 따라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음.

(6) 기본관계:

김 부장이 조약 형식에 의할 것을 주장하였던 바, 오히려 외상은 조약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영토 조항에 난점이 있다고 말하였음. 이에 관련하여 현재 행정적 지배 하에 있는 지역 및 앞으로 행정적 지배 하에 들어올 지역으로 하는 등의 표현 방법이 이야기 되어 서로 연구 하기로 하였음.

(7) 독도 문제:

오히려 외상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일본이 제소하겠으니 한국 측이 이에 응소할 것이라는 것을 국 고 정상화 시에 약속하여 말하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김 부장은 한일 회담의 현안 문제가 아니며 한국민의 감정을 경화시킬 뿐이라 하여 반대하였음.

이에, 오히려 외상은 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다른 해결

165



II 급 비밀

발안이 없겠는가 하고 하였는 바, 김 부장이 제 3 국의 요청에 다급이  
어떻게든 가라고 시사함에, 오비록 외상은 ~~생각~~ <sup>25</sup>해볼 만만 안이라고 하면서  
제 3 국으로는 미국을 지적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하였음.

(김 부장의 의도는 국제 사법 재판소 제소를 위한 입축의 감축한

요구에 대하여 몸을 피하고 사실상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sup>장전 상의</sup> ~~장전 상의~~ <sup>위협</sup> ~~위협~~ <sup>태안</sup> ~~태안~~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됨.)

(8) 정치회담:

회담의 연내 해결이 오망되는 바, 정치회담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개최시기는 앞으로의 예비접촉의 진전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상호 양해하였음. (포인 및 일본국회 인준  
시기는 전에 합의한 것을 재확인하였음.)

4. 건의:

(1) 금번 회담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결말을 본 것은 아니지만  
결말에 가까운 접근이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하 현안의 초의를 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초의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선박 및 문화재  
등의 기타 현안에 관하여도 준비를 갖출 것을 건의함.

(2) 문인구 대표는 11월 15일 임시 귀국하게 되는 바, 법적지위  
문제의 초의를 중단시키지 않고 나아가서는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삼 대표를  
즉시 파견할 것을 건의함.

(3) 청구권의 해결과 회담의 전반적 촉진을 위하여 어업 문제의  
초의를 촉진시켜야 되는 만큼, 지천근 대표가 11월 1일 잠정 어업 협정 안  
(가칭)을 단시일 내에 작성하여 가지고 올 것을 건의함.

2127

II 급 비밀  
SECR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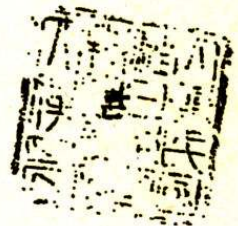
166

II 密 秘 令  
SECRET

- 6 -

유 첨: 오비록 외삼이 회담 시에 사용한 메모 사본 1

주 의 대 사 배 의



1966.12.3 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2125

~~II 密 秘 令  
SECRET~~

167



1963年 11月 12日의 所傳된 第二次 金鐘武  
中央情報部長과 太平外相 會談에서 日側의  
手紙에 보

1. 一般請求權問題

(1) 金額

(2) 方式

國交正常化에 關한 取極等의 うち에 下記의  
趣旨의 条項을 添ふ ことによリ 解決할 こと을 提議  
함.

第一項 日本國은 日韓國交의 正常化에  
祝し 兩國間의 友好親善을 利念し 韓國에  
對한 民生安定과 經濟發展에 寄與할 ため  
日僑ドル에 等しい 內의 価値을 有함 日本人의  
役務의 爲에 日本國의 資本貸入을 供與할 こと  
함.

第二項 兩締約國은 平和條約 第十條에  
基つて 韓國 또는 韓國國民의 日本國 또는  
日本國民에 對한 未だ의 請求權이 完全히 解決  
된 最終的히 解決された こと을 確認함.



## 2. 換業問題

日本側においては具体的な協定案を完成してあり、いつどこへ提出する用意があるから

韓国側においても直ちに具体的な協定案を作成提出された。

(日本側としては日本と第三国との換業関係に悪い先例となつた影響が及ぼすような方式は採用できなかつた) かつおとれの限り限度においては、できる限り韓国側の立場をも尊重する用意がある。

## 3.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問題

(請求権問題の討議が大詰めに近づき、また、換業問題に関し双方が具体的な協定案が提出され、討議の本格化した段階においては) 会談全体の答辭を、一層よくする趣旨からも日本側としては法的地位協定の討議をさらに促進し話し合いがまとまれば他の協定に先んじて本協定の後調子も「行なう」用意がある。



#### 4. 船舶位置及文化財

##### (1) 船舶位置問題

日韓双方の法理上の主張には隔りがあ  
る。また、事実関係の確立も極めて困難なため、  
政治的解決を図るにこの場合適當であると  
考へる。

##### (2) 文化財問題

日韓事例としては文化財は出土地に返還し  
た例は少なくない。この国際法上の原則に  
照らせば、従って日本にあり韓国文化  
財を「返還」する義務はないと考へられる。  
しかし、この場合、権利義務とつて関係は  
ない。兩國間、文化交流促進の一環  
としてある程度、固有文化財の  
「贈与」を考へる用意がある。

#### 5. 竹島問題

この種の法理紛争は国際法上の  
裁判所の公正な判断に於て解決する



最も適当に「おつやふたつ」國文正當化交渉の  
際双方の面子を保つた國難は問題も  
一冊冊上り「おつやふたつ」譯書同側り  
「國文正當化」に 本件が 國際司法裁判所の  
提訴に及ぶ。と云ふことでは「おつやふたつ」  
是非予断に及ばぬ。(提訴及ぶ「おつやふたつ」は  
國文正當化に及ぶ)

領土紛争等に及ぶこの種裁判、先例  
(例案等)とて 明らかとなつて、提訴が  
判決まで少くとも二年内外はかかる  
行爲に及ぶ。判決のトコロは 國文正當化に  
相当期間経過してゐるとなるわけであり  
差し當り 双方の國の感情をより激する  
おとめは なること、解決を 予断せられたい。



환입대(정) 제 557 호

1962. 12. 10.



수신: 외무부 장관

46,30 gwh

제목: 환입 회답에 관한 일축의 기본 입장에 관한 문서 상담

1. 금 12월 10일 14:30시에 "가유" 회관에서 본직은 일본 외무성 우시토구 아세아 국장과 면담하였는바, 그 자리에서, 우시토국장은 본직에게 별첨 사본과 같은 환입 회답에 관한 일본측의 기본 입장을 수교하였읍니다. 동문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이세끼 대사가 금일 한국으로 휴대하고 간것의 사본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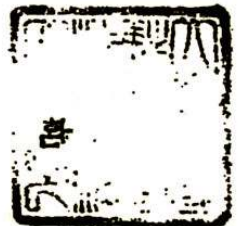
2. 당 대표부로서는 전기 일축 계안을 검토한 후 조속히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3. 금일 우시토구 국장과의 면담 석상에서, 전번 오히라 외상이 김 부장에게 보낸 청구권 문제에 관한 공한 증 청산 계정 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축의 뜻을 우시토구 국장에게 문의하였는바, 우시토구 국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현금 지불을 요구할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처리해야 할 문제이니 그 처리 방법을 연구해보아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아울러 보고합니다.

1962.3

주 입 대 사 배 의 훈

1122



예고문: 일반문서로 재분류 (환입회답 종료후)

284



0337

## Ⅱ 竹島問題

第2回大平・金会談において金部長が提案された第三国の調停に任すという考えは、本件の円満解決に対する韓国側の歩み寄りの努力の現れとして、日本側としても多とするところであるが、他方、調停に任すというだけでは、調停がいつまでも成り立たず現状が継続するおそれがあるとの日本国民の不安を解消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いわば両国の主張を折衷した形で(1)国交正常化後例えば1年間日韓双方の合意する調停機関による調停に付し、これにより問題が解決しない場合には、(2)本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とするのが最も相当と考える。

0349

295  
1133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한일대(정) 제 559호

1962. 12. 11.

관리  
번호 1661

수 신: 외무부 장관

제 목: 한일회담에 관한 일축의 기본 입장에 대한 대표부 의견

(연: 1962. 12. 10. 한일대(정) 제 55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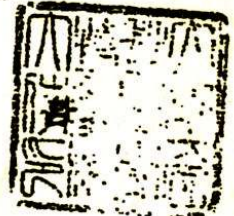
연호로 보고한바 있는 일축 제출 문서에 관하여서는 일축이  
제 18차 예비 접충에서 공식으로 확인하기를 희망하는것 같은 발언을  
한만큼, 다음 예비 접충 석상에서 곧 이에 대한 토의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당 대표부의 의견 및 아축이 취할 입장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참고하시고 조속 훈령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첨물: 한일회담에 관한 일축의 기본 입장에 대한  
대표부의 의견서

1966. 12. 3  
의거 일반문서보

1962. 12. 30. 15

주 일 대 사 배 의



1134

예그문: 일반문서보 제분류 (한일회담 종료후)

246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0351

독도 문제

1. 김부장은 제 2 차 김.오히카 회담에서 제 3 국에 의한 조정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시사하였는바 그 진의는 본 문제를 가부간 해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것이 아니라, 일본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강경하고 집요하게 주장하여왔고 가급적 현상유지를 꾀하여 독도에 대한 아국의 영유권을 기성 사실화하자는데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음.

2. 김부장이 이를 시사한 또하나의 이유는 일본의 수상이나 역대외상이 국회에서의 정책집의에 대한 답변등을 통하여 국고정상화시에 본문제를 일괄해결 하겠다는 언질을 준 상정을 참작하여, 이에대한 대안으로 구상하였던 것임.

3. 김부장이 오히카 외상에게 시사한 방안은 국제법상의 거중조정 (중개 *Mediation*) 이였으나, 일축안에 의하면 일축은 11조정기관에 의한 조정 즉 국제법상의 협의의 조정 (*Conciliation*) 을 구상하고있는것으로 보임으로 김부장이 시사한 방안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Conciliation* 은 *Mediation* 보다 조정효과가 강력한것으로 현 단계에서 아측으로서는 11조정 기관에 의한 조정은 동의하기 힘든것임.

4. 또한 일축이 제 2 단계로서 일정기간 (원건에 1년) 에 조정에 의하여 이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경우에는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에 동의할것을 요구하고있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는것으로 조정의 성패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수 있는것으로 해결불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사전조치를 취하여둔다는것은 많이되지않음.

5. 아측으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수락할수없는것인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일축이 제 2 차 김. 오히카 회담에서 김부장에게 수고한 문서에는/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국사제에서의 징송은 최대 2년이내에는 특권이 가려지는것임.

305

1143

0360



(2) 현 국사재의 구성을 보건해 일손은 11대나가게 (전 최고재장관)가 판사로 선출되어있어 그의 영향력이 상당할것이 예상되어 사건내용의 장단에 불구하고 그 분위기에 있어 우선 아축해 불리함.

(3) 국사재규정 제 41 조에는 정송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위한 가처분에 관한규정이 있는바 임축은 이를 원용하여 판결전이라도 아축의 독도상의 시설 및 경비원등을 철거시킬 조치를 취할수 있음.

(4) 특히 아축에 점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바 이는 규정 제 62 조에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국가는 재판에의 참가를 요청할수 있는바, 북한괴뢰가 이를 원용하여 아축의 입장을 난처케할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닐.

(5) 따라서 변단계에서 국사재 제소에 대한 언질을 주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

6. 결론으로 아축으로서는 어디까지나 11 제 3 국에 의한 거중조정 (Mediation) 에 의한 해결방안을 고집하여 나갈것이며, 이의 성패는 그때 가보아야 할수 있는것이 라는 이유하여 사전에 국사재 제소에 관한 언질은 줄수없는것으로 사료됨.

306

1144

0361

# 대한민국외무부

번호: JAW-01051

착신암호전보

~~비밀~~  
CONFIDENTIAL

관리  
번호 65-5

수신인: 외무부장관

발신인: 주일대사

가	달	일	시	분	초	월	일	년
						1965	11	8

본직은 "우시바" 수석대표대리의 초대로 금 7일 12:30 - 14:30에 주식을 같이 하면서 회담한바 동내용을 아래와같이 요약 보고함. (방의공사, 우시토구 아세아극장동석)

1. 수석대표간 비공식회담.

작년말에 일측으로부터 비공식으로 제의가있었던 수석대표간 비공식회담의 운영에 관하여 본직은 우선 1. 18.의 본회담 재개전에타도 1차 회합하여 회담 진행방식에 관하여 협의도루하고 재개후에도 최소 주 1회 정기적으로 회합하되, 그 외에도 각분과위원회의 토의가 난관에 부딪칠 경우에는 그때마다 수시 비공식으로 회합하여 관계분과위의 양측 수석위원도 참석시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듣고 이를 보다 구체적인 견지에서 해결도루하자고 하였든바 일측은 이에 전폭적으로 찬동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2. 한일회담의 운영방식.

본직은 일측이 종래 어업분제에 지나치게 중점을두고 어업위원회의 진행도와 견주어 여타위원회를 진행시키려는듯한 인상을 받고있는바, 재개회담에 있어서는 일단 대체적인 타결을 2월말까지 이루한다는 목표아래 회담을 진행시키되 적어도 비교적 해결이 <sup>용이</sup> ~~쉬운~~ 가능한 기본과제 및 협의지위는 협정초안 완성까지 이끄러가도록하고

비서	아주	통상	상공	침와대
총무	구미	경기	농림	총리
의전	정문	국방	조달	공보부
여권	방교	중정	공보관	

수신시간:

검인

1965 11 8 AM 10 36

와신파

~~비밀~~  
CONFIDENTIAL

0611

205

353

207



III 급 비밀  
CONFIDENTIAL

2

그 때까지 어업문제의 타결을 보지 못하면 예컨대 정치회담 등 새로운 진행방향을 모색하도록 합의 어떤가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이제까지 의식적으로 어업위원회의 진전을 타위원회와 관련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특히 대장성등이 어업문제의 대강 타결에 관한 명확한 전망이 타도서치 않는 한 토의에 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외무성이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하면서 일측도 본적이 말한바와 ~~한시~~ 같은 룰로도 회담을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측은 종래 어업, 청구권의 양문제에 기위 비교적 양측입장의 접근이 용이한 법적지원 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오다. 한국측이 종태입장을 번복하는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시 정제되었으나 종태합의선에 따라 토의해나가면 응이할 의향을 볼수있을것으로도 생각하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없고 외무성이 독자적으로 진행시킬수있는 기본과계위원회에 서도적 역할을 담당시키고 토의를 진행해나가자는 의거로 포명 하였음.

3. 어업문제

어업문제에 관하여 거반 이규성 수석위원이 와다 대표와 비공식으로 맞난자락 에서 교환하였던 의견이 일부신문지상에 한국측의 새로운 구상으로 보도되고있는 데 대한 일측의 반응을 타진하면서 본직은 한국측이 국내대책상, 명목도 중요하나 그렇다고 실익도 버리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고 양측이 입장을 다같이 설명 납득 시킬수있는 방안을 생각해낼수없겠는가고 하였는데 일측은 자기측도 사시사 머무과 신의의 야적이 다이를 양보하는데 하계가이어 야자조 하나르 저학 버리기 어려운

III 급 비밀  
CONFIDENTIAL

0612

354

III ~~국 비 밀~~  
CONFIDENTIAL

입장에 있다하면서 본직이 시사한 방도에 관하여는 계속 연구해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4. 일외상 방한문제.

일측은 아직도 입장이거나 수원등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라하면서 수상 방미 직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5. 두도문제.

본직은 제 2차 본회담시에 "우시바" 수석대리가 두도문제를 국고정상화와 결부시키는데 관한 발언을 하였으나 본직의 의견으로는 일측태도가 진실로 그렇다면 한일 국고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일본이 양국의 국고수립을 위하는 것으로도 영토적 야망이 강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측은 과거 이문제를 가지고 수상이나 외상이 국회에서 국고정상화와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하여온 경위에 비추어 국고사에 이에대한 해결의 전망이라도 뚜렷이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임으로 부응거리라고 하면서 과거 한국측으로부터 국제사법 재판소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 이는 이는 남부하나 한국측이 비공식으로 시사한바있는 기중조정은 해결의 전망이 뚜렷하지않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고 비연구해보게라고 말하였다.

6. 동남아 외상회담 예비회담.

포기회담에의 일본의 참석에 관하여서는 정부지시 (외아남 721.1-701, WJA-12223, WJA -01007)에 따라 회담의 성격, 이제까지의 경위등을 재설명하고 안정

207 의 신 바

III ~~국 비 밀~~  
CONFIDENTIAL

0613

355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 4 -

일주의 참석을 중용한바 일주는 지난 11. 14.의 본직과 시이나 외상간의 면담  
결과에 언급하면서 (참조: JAW -11317 3항) 그 이상 명확한 답변은 피하였음.  
(이와관련하여 일주는 예비회담이 방콕에서 개최될 경우 초청자가 누가될것인가를  
문의하여온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람.)

7. "다가스기" 수석대표와의 회담.

본직은 "다가스기" 수석과 명8일 1640에 "시이나" 외상실에서 외상 소개로  
초대받을 예정이다. (주일정-외아복)

예고: 재분류 67. 12. 31.

권으로 재분류 (MO) 1월 1일  
과장 최 광 수

356

0614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의 신 과

208





제 2 조

1.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결할수 없는 분쟁은, 다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양계약국 정부간에 있어서 합의되지않는한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위하여 부락되는것을중한다
2. 중재위원회는, 양 계약국 정부가 분쟁의 부락에 관하여 체결하게되는 중재계약으로 별도의 합의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법의 원칙 및 적용이 있는 조약 규정에 따라서, 부락된 분쟁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것으로 한다.

제 3 조

1. 중재 위원회는, 3 인의 중재위원으로서 구성된다.
2. 각 계약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의 계약국의 정부가 상대방의 계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 부락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의 기간내에, 각 1 인의 중재 위원을 지명하기로한다.
3. 제 3 의 중재 위원은, 2 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2 인의 중재 위원이 2 에 정하는 기간후의 30 일의 기간내에 합의에 의하여행하는 선정에 의하여, 또는 동 기간내에 그 2 인의 중재 위원이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제 3 국의 정부가 행하는 선정에 의하여, 지명되는 것으로하고, 중재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단, 제 3 의 중재위원은, 양 계약국 중 어느 쪽의 국민이어서는 안된다.
4. 어느 일방의 계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 3 의 중재위원이나 제 3 국의 선정에 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중재위원회는, 각 계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후의 30 일의 기간내에 각각 선정하는 제 3 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 인의 중재 위원 및 이들 제 3 국의 정부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다른 제 3 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 의 중재 위원을

의 선 파

1977 FEB 8 12

511

0790

361



위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1.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중재위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2. 양 계약국의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기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최소 조항)

(합의 의사록)

제 3 조 및 4 에서 말하는 "각각 선정하는 제 3 국" 및 "이들 제 3 국의 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다른 제 3 국" 은, 일본국 및 대한민국, 상호간 외교 관계를 갖는 국가 중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한다.

(주일정-의아복)



# 대한민국 외무부

착신암호전보

~~III 비밀~~  
CONFIDENTIAL  
~~중~~ ~~방~~

번호: JAW-06550

일시: 222158

지급

관리  
번호 65-717

수신인: 국무총리

발신인: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참조: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외무부 차관.

1. 금 22 일 17:00 시 예정대로 한일관 제 현안에 본조언을 완료하였습니다.
2. 독도문제는 이미 보고 올린바와같이 시이나 외상과의 제 2차 회담 (금일 11:00 시 - 13:15 시) 에서 독도는 아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는 마음과같은 분쟁의 명확적 처리에 관한 양해문안 합의에 성공하고 그후있을 포괄공문 형식으로 상보 포함하였습니다.

"양국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의하여 해결할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제의를 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참거문안중 "양국간의 분쟁" 이라는 어구에는 독도문제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것은 장애에있을수있는 분쟁문제를 의미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대하여 금일 16:15 시 사토 내각총리대신과의 면담시 총 총리대신으로부터 구두 보장을 받았으며 따라서 일본정부는 우리정부가 장래의 문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대하여 관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않을것임을 또한 사토 총리대신으로부터 보장을 받았습니다.

비서	아주	통상	상공	정와대	당	당	과	상	국	총	라	관	장	관	국 문 서 과
총무	구미	정기	농림	총리	장	관	장	관	장	관	관	관	관	관	
의전	정문	국방	조선	공보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여권	방교	중정	공보관	공보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의 신 과

401

~~III 비밀~~  
CONFIDENTIAL

~~CONFIDENTIAL~~

따라서 정부로서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종래의 입장을 바꿀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 우리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시게 바랍니다.

이로: 일관문서로 2. 26. 07. 12. 31.

3. 대총영과 7. 7. 지시한바 있는 연안 어업 문제는 동 어업이 자유 규제라는 그  
성격상 특히 일본 모로서는 어떠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미나" 외상이  
특별한 노력을 기우려 "사카타" 농상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모의기록"  
정식으로 확보 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성취하였습니다. 같.

5218

의 일 파

~~CONFIDENTIAL~~

443

402

403